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석·박사학위 통합과정 마련〉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85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 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
3. 회부연월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제33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사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학석박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관련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② (생략) <u><신설></u>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② (현행과 같음) <u>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u>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31조(수업연한)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5. 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3조(입학자격) ① (생략)	제33조(입학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u>통합과정</u> 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 <u>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u> 에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 ④ (생략)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학사학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u>
⑤ ~ ⑥ (생략)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학석박 통합과정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¹⁾으로서 학

사제도 유연화를 통해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함임.

현행법상 학위 간 통합과정은 학사학위·석사학위 통합과정과 석사학위·박사학위 통합과정이 있음. 각각의 통합과정은 고등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연구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부과정에서 대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되고, 등록금 지원을 받으며, 학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생략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음.

<학·석사 통합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현황>

년도	학위 과정명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합계			
		대학 수	전공 수	선발 인원	재학생	대학 수	전공 수	선발 인원	재학생	대학 수	전공 수	선발 인원	재학생
'22	석박사 통합과정	97	1,879	5,743	18,280	29	143	306	1,175	126	2,023	6,049	19,455
	학석사 통합과정	3	19	38	41	4	5	145	998	7	24	183	1,039
	소계	100	1,836	5,874	19,373	33	130	456	2,127	133	1,966	6,330	21,500
'23	석박사 통합과정	109	1,822	5,847	19,318	38	124	311	1,132	147	1,946	6,158	20,450
	학석사 통합과정	5	14	27	55	6	6	145	995	11	20	172	1,050
	소계	114	1,836	5,874	19,373	44	130	456	2,127	158	1,966	6,330	21,500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기 인재양성을 가능케 하는 학석박 통합과정의 도입은 이러한 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이점이 있음.

개정안은 학석박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8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1) 국정과제 83 :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대학입장에서는 우수인력의 조기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교육부는 현행 법률²⁾에서 학석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 이상, 석박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³⁾에서는 수업연한을 학석 통합과정은 2년, 석박 통합과정은 1.5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에서 학석박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8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 학석박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최대 2.5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은 학석박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과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거나 수료한 사람에 대해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과 통합과정 수료 및 중도 퇴학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⁴⁾에서도 학석 통합과정 및 석박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과 통합과

-
- 2)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5. 8.>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 4)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정 수료 및 중도 퇴학하는 사람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학석박 통합과정 선택이 대부분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과 학석박 통합과정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대학에서 학석박 통합과정 학생 선발 시 대학 모집요강 등에 학위 수여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경우 의학교육 모델에 대해 학사-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으며, 2020년부터 기초학과 모집개혁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강기계획)을 발표하여 수학, 물리학, 화학, 정보학 등에 대해 학석박 통합과정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의학 분야에 대해 학석박 통합과정을 운영 중임.⁵⁾

문 의 처

02)6788-5188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참고자료 - 학·석·박사 통합과정 해외 운영 사례 참고

※참고자료 : 학·석·박사 통합과정 해외 운영 사례

① 중국 사례

- 8년제 의학교육 모델(학사-박사 통합과정, 8년제)
 - 졸업 시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박사학위증 및 의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증은 의학전문화위 MD(Doctor of Medicine)를 수여받게 됨
 - 북경연합의과대학이 실시한 8년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2001년 북경대학, 칭화대학과 함께 8년 의학교육을 시범적 실시
 - 2015년까지 전국 14개 대학이 8년제 의학교육을 시범적으로 승인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해 제1군의대학(현 남방의과대학), 제2군의대학, 제3군의대학 및 제4군의대학도 8년제 의과대학 시범운영을 승인
 - 이들 8년제 의대 모델 시범운영 대학들은 교육운영 계획과 교육과정 설계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하며 8년제 의대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음
- 중국 교육부는 2020년부터 혁신적 우수인재 선발 및 양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일부대학에서 기초학과 모집개혁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강기계획이라 칭함)'을 발표(2020.1.13.)
 - 2020년 가을학기(중국, 9월학기)부터 학석박 통합과정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6개 학교가 지정되어 운영
 - ※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등
 - 참여 전공으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정보학, 생물학, 역사, 철학, 고문학 정도로 제한하여 실시

② 싱가포르 사례

- 싱가포르 자치 대학* 중, SMU(싱가포르 경영대학)**는 외국대학과 협약을 맺고 ①학·석사 통합 과정(정보 과학 분야) 및 ②학·석·박사 통합 과정(의학 분야)을 운영 중
 - *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과 유사한 성격, 법인으로 설립되어 예산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취업률 등 국가 통계 대상으로 지정
 - ** 법학·회계학·경영학·경제학·정보 시스템·컴퓨터과학·컴퓨터 및 법학·사회과학 등 8개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 제공, 토론식, 협력 및 세미나 기반 교육 방식 도입 등